|  |
| --- |
| 한의의 미래, 의료의 미래서울특별시한의사회Seoul Korean Medicine Association |

수 신 분회장

(경유) (사무국장)

제 목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 관련 안내

1. 한의약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
2. 관련근거 : 대한의-2022-10-0204(2022.10.25.)
3. 의료법 제57조 제8항 및 제9항에 **따라 의료광고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**이며, **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중앙회(협회) 의료광고심의 위원회 홈페이지(http://ad.akom.org)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 심의 신청을** 해야 합니다.
4. 최근 이와 관련하여 **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유효기간 연장 접수가 불가함에 따라 수수료 감액처리 및 광고 집행을 못하는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**되고 있는 바, 기 승인받은 광고의 심의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여 **유효기간 연장 심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**할 수 있도록 귀 분회소속 회원님들께 적극 안내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※ 관련 의료법령

|  |
| --- |
| ※ 의료법 제57조(의료광고의 심의)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**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** 한다.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**유효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**하여야 한다. |

※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(별표 2)

|  |
| --- |
| 수수료액(제11조 관련) \* 유효기간 연장 심의 수수료액 기준 - 기 승인받은 광고의 유효 기간(3년) 만료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, **기 승인광고 심의수수료액의 50%를 부과**함. (단,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 재시행(18.9.28.)된 이후 승인된 광고에 한하여 적용함) |

. 끝.

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

부장 윤상환 국장 김태준 처장 김석모 협조

서한의 – 제 239 호 (2022.10.25.)

우)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489 6층 / 홈페이지 : https://skma.or.kr

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화 : (대)02-960-0811 / 팩스 02-6944-8075 / E-mail : skma@skma.or.kr